

청탁금지법 준수 및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연수자료

I. 「청탁금지법」 안내

■ 청탁금지법 개념



- 누구라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하여서는 안되며,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 및 **제공한 자(학부모 등)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특히, **학생·학부모와 담임교사**(학생 수업 교사 등 포함)는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으므로 **어떠한 금품등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시 처벌
 - 학부모 :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 교사 :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 징계

■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연번	위반 사례	처리 결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부 부감교사 장모상에 학부모회에서 근조화환을 보냄 ○ 코치의 배우자 출산 시 학부모회에서 축하 꽃병을 보냄 	학부모 : 법원 과태료 2배 부과 교직원 : 징계 및 과태료 2~4배 부과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급반장 학부모가 반 학생에게 간식을 보내면서 담임교사에게 떡, 과일을 교무실로 보냄 - 담임교사는 학부모에게 반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학생들에게 나눠주라는 요청에 따라 제공자에게 직접 반환하지 않았고,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음 	학부모 : 법원 과태료 2배 부과 신고하지 않은 교직원 : 징계 요구 → 불문경고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 9명이 교직원의 경조사에 방문하여 경조사비를 내고 감 - 특별휴가가 끝나고 학부모로부터 받은 경조사비를 돌려 주었으나, 신고하지 않음 	학부모 : 과태료 부과 요구 신고하지 않은 교직원 : 징계 요구 → 경고

청탁금지법 위반! 아이에겐 상처를, 교사와 학부모에겐 처벌을 남깁니다.

II. 「불법찬조금」 안내

▣ 불법찬조금 개념



① 청탁금지법 위반

☞ 학부모 단체 등이 불법으로 모금한 금품 등이 교직원에게 제공될 경우

② 불법찬조금 해당

☞ 학부모로부터 모금된 금품이 합법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거나 학교운영위원회 미심의, 학교발전기금회계에 미편입한 상태에서 학교 교육활동에 지원될 경우

※ 학교발전기금 (합법처리)

☞ 학부모로부터 모금된 금품이 합법적인 절차로 모금 또는 기탁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 후, 조성(기탁) 목적에 맞게 집행되는 경우

※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교직원복지비로 조성·운용 불가

III. 「청탁금지법 위반 및 불법찬조금」 신고 센터 운영

부산광역시교육청과 ○○학교에서는 깨끗하고 신뢰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및 불법찬조금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 신고 센터

- 홈페이지(www.pen.go.kr) 교육비리신고발센터([하라인](#)) / 전화(☎ 051-8600-245)

▶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 홈페이지(<http://ngocenter.or.kr>) 청렴사회실천부산네트워크([익명 부패방지신고센터](#))

▶ ○○학교 신고 센터 : ○○초(중,고)등학교장 전화(☎ 000-0000-000)

IV. 학부모가 꼭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학생·학부모와 담임교사(교장, 교감, 학생 수업교사 등 포함)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떠한 금품등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례1 학급회장 어머니가 담임 선생님에게 수학여행을 가서 학급 아이들과 맛있는 것을 사드시라고 하면서 50만원을 전달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 ☞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선생님은 직무와 관련하여 학부모로부터 50만원을 받았으므로 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징계대상에도 해당됩니다.(법 제8조 제2항, 제21조, 제23조 제5항 제1호)
- 학부모는 공직자등인 교사에게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제공하였으므로 해당 금품등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됩니다.(법 제8조 제5항, 제23조 제5항 제3호)

사례2 학부모회 간부 등이 운동회, 현장체험학습 등에서 여러 교사를 대상으로 간식을 제공했을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 ☞ 학부모와 교사는 평소에도 성적, 수행평가 등과 관련이 있는 사이이므로 학부모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사례3 교사가 스승의 날 학생대표가 제공하는 카네이션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고 선물의 가액기준이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할 수 없습니다.
- 다만,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등 학생의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에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례4 학교 행사(축제, 체육대회 등)에 학부모회(단체)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품 추첨을 하거나 전교생에게 행사 당일 날 간식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대상은 공직자등에 한정되므로 학부모가 교사에게 제공은 불가하며 학생에게 제공하는 경품이나 간식 등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품비나 간식비의 근원이 학부모로부터 각출한 불법찬조금이 아니어야 하며, 학교로 반입되는 음식물의 경우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의해 학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반입하여야 하며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하여 보존식을 두어야 합니다.

사례5 반 대표어머님(개인)께서 학생 체육대회 때 반 학생들에게만 음료수를 제공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인가요?

☞ 음료수 제공자인 학부모와 학생간의 관계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관계가 아니므로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학부모 또는 학생이 선생님께 음료수를 제공한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학교로 반입되는 음식물의 경우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의해 학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반입하여야 하며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하여 보존식을 두어야 합니다. 학부모로부터 작은 간식이라도 받을 경우 학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것이고, 다른 학부모도 음식물을 준비해야겠다는 심적인 부담을 가질 수 있으므로 현명하게 처리해야 하겠습니다.

사례6 담임선생님께서 결혼을 할 때 학부모에게 축의금 받아도 되는지? 학부모가 담임교사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5만원의 축의금을 낸 경우 처리방법은 ?

☞ 공직자들은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 예상되는 직접적 이해관계자(학부모)로부터는 가액기준 내의 경조사비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 담임교사는 지체 없이 해당 학부모에게 직접 5만원을 반환하고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축의금을 제공한 학부모는 5만원의 2~5배과태료 부과됩니다.

※ ‘지체 없이’의 의미 : 지체 없이는 불필요한 지연 없이를 의미하고, 지체 없이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를 의미함
지체 없이의 판단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사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사례7 학부모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학부모회 간부일동으로, 그리고 특정선생님이 아니라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간식을 제공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 자녀들이 학교에 재학 중인 상황에서 복수의 학부모회 간부가 교직원 전체에게 간식을 제공한다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해당됩니다. 이는 학생의 평가 등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없는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됩니다.

사례8 대회 참가 또는 훈련 종료 후 학부모들이 선수들을 대상으로 회식을 하거나 식사(간식)를 하는 자리에 지도자나 감독교사가 함께하면 위반인가요?

☞ 학생 선수의 평가경기출전 등의 권한을 가진 운동부지도자(감독교사 포함)와 학생 선수의 학부모 간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므로 가액기준 3만원 이하 음식물이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학부모(회)가 직접 운동부지도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지만,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제1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32조에 명시된 절차(학교회계 편입 등)를 준수하여 집행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합니다.

사례9 야간자율학습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께 감사의 표시로 학부모가 직접 만든 간식을 학생을 통해 보내드리는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 위반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금지하고 있는 금품등은 직접 돈으로 산 물건뿐만 아니라 ‘편의 제공 및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 (재산적 이익)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이고, (편의 제공)은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 향응 또는 교통 숙박 제공 등이 있으며, (경제적 이익)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이 있습니다.

사례10 담임교사가 종업식 때 1년 동안 지도한 학생으로부터 감사의 뜻으로 2~3만원 상당의 작은 선물을 받을 수 있는가?

☞ 학년 종업식을 마치고 다음 학년으로 진급한 이후에는 학생에 대한 성적 평가 등이 종료된 후 이므로 이전 학년도에 담당했던 학생으로부터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학년 담임교사가 진급한 이후에도 해당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담당하는 담임교사 또는 교과담당교사인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사례11 졸업식 행사때 학부모회장 또는 학교운영위원장이 축하 화환 등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가?

☞ 학부모회장 또는 학교운영위원장 등이 졸업식 후 해당학교에 재학하는 자녀가 없을 경우 사교·의례 목적으로 화환 등을 학교에 보내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졸업식 후 해당학교에 재학하는 자녀가 있는 학부모의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사례12 담임교사가 퇴임하는 경우 퇴임식 날 학급 학생들이 각출하여 준비한 선물을 전달할 수 있는가?

☞ 퇴직하는 공직자는 재취업 등으로 인하여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한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임식때 학생들이 제공하는 선물은 허용됩니다.